

의안번호	2220329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6.8.24.
추계번호	26B377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예비사업시행자가 예비구역에서 제3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한 경우로서,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없음에도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 간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예비사업시행자가 예비구역에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한 경우로서,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1)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 간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 1)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예비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지원하는 경우, 손실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개정안에 따른 지원은 산업단지 지정구역과 예비구역 간 불일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예비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 재정소요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 및 요건, 손실의 범위와 산정방법, 지원의 기준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는 예비사업시행자가 예비구역 내에서 취득하거나 사용한 토지등의 규모 및 가액,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 최종적인 산업단지 지정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등의 규모 등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가 입은 손실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손실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하위법령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 손실의 인정 범위, 손실액의 산정

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4. 사업 시행방법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재원(財源) 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산업단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 공모를 통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모할 수 있다.
-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공모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5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공모 이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6항 단서에 따라 공모를 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⑧ 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2조제7호의3의 복합용지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의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법, 지원비율 또는 지원한도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매권 행사 여부 및 이에 따른 토지등의 반환·정산 관계 역시 실제 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는 향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예비사업시행의 발생여부 및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